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회

목 차

I. 결산검사의견서	5
II. 결산요약 및 분석	9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11
2. 다음연도 이월액	18
3. 기금결산	18
4. 재무결산	20
5. 성과보고서	22
6. 채권 및 채무의 결산	23
7.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23
8. 세입세출외현금의 결산	24
III. 개선 및 권고사항	25

I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의견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2018년 5월 1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7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 감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8년 4월 2일부터 2018년 5월 1일 까지(3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7회계연도 서울시 강남구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 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서울시 강남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가지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강남구청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공유재산·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감사위원

대표위원 김 광 심 (인) 

위원 윤 현 조 (인) 

위원 김 영 식 (인) 

위원 박 명 순 (인) 

위원 강 성 식 (인) 



결산요약 및 분석

1. 세입·세출결산 총괄

가. 개요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회계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C=A-B)
합 계	785,111,984,000	17,745,846,930	802,857,830,930	1,055,144,452,451	684,850,690,541	370,293,761,910
일반회계	740,088,446,000	9,860,716,930	749,949,162,930	924,708,513,921	656,930,132,347	267,778,381,574
특별회계	45,023,538,000	7,885,130,000	52,908,668,000	130,435,938,530	27,920,558,194	102,515,380,336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 세입·세출예산현액 802,857,830,930원에 대하여

- 세입결산액 1,055,144,452,451원,

- 세출결산액 684,850,690,541원이며,

○ 결산상잉여금 370,293,761,910원으로 구금고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총괄표상의 금액과 일치한다.

1) 세입

(단위 : 원)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가	수납액 나	미수납액 가-나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802,857,830,930	1,207,458,300,237	1,055,144,452,451	152,313,847,786	3,946,143,170	148,367,704,616	
일반회계	749,949,162,930	1,021,338,357,951	924,708,513,921	96,629,844,030	3,608,367,530	93,021,476,500	
특별회계	소 계	52,908,668,000	186,119,942,286	130,435,938,530	55,684,003,756	337,775,640	55,346,228,116
	주차장	49,967,827,000	184,771,253,292	129,549,352,126	55,221,901,166	337,775,640	54,884,125,526
	의료급여기금	852,986,000	1,348,688,994	886,586,404	462,102,590		462,102,590
	기반시설	2,087,855,000					

2) 세 출

(단위 : 원)

회계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나	다음연도 이월액다	불 용 액 라=가-나-다
합 계	785,111,984,000	17,745,846,930	802,857,830,930	690,448,164,611	684,850,630,541	17,792,220,560	100,214,919,829
일반회계	740,088,446,000	9,860,716,930	749,949,162,930	662,047,341,417	656,930,132,347	17,311,955,560	75,707,075,023
특 별 회 계	소 계	45,023,538,000	7,885,130,000	52,908,668,000	28,400,823,194	27,920,558,194	480,265,000
	주차장	42,082,697,000	7,885,130,000	49,967,827,000	27,583,372,019	27,103,107,019	480,265,000
	의료급여	852,986,000		852,986,000	817,451,175	817,451,175	35,534,825
	기반시설	2,087,855,000		2,087,855,000			2,087,855,000

3) 세계잉여금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은 370,293,761,910원이며,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370,293,761,91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나. 일반회계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총괄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회계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일반회계	740,088,446,000	9,860,716,930	749,949,162,930	924,708,513,921	656,930,132,347	267,778,381,574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총괄은

- 세입·세출예산현액 749,949,162,930원에 대하여
 - 수납액 924,708,513,921원,
 - 지출액 656,930,132,347원이며,
- 결산상잉여금 267,778,381,574원으로 구 금고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총괄표상의 금액과 일치한다.

1) 세 입

(단위 : 원)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전년도	687,358,768,480	946,524,569,606	847,372,142,286	99,152,427,320	4,565,124,150	94,587,303,170
해당연도	749,949,162,930	1,021,338,357,951	924,708,513,921	96,629,844,030	3,608,367,530	93,021,476,500

2) 세 출

(단위 : 원)

회계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전년도	682,183,822,000	5,174,946,480	687,358,768,480	616,520,303,817	612,349,976,897	9,860,716,930	65,148,074,653
해당연도	740,088,446,000	9,860,716,930	749,949,162,930	662,047,341,417	656,930,132,347	17,311,955,550	75,707,075,023

3) 세계잉여금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267,778,381,574원이며,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267,778,381,574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다. 특별회계

-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회계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합계	45,023,538,000	7,885,130,000	52,908,668,000	130,435,938,530	27,920,558,194	102,515,380,336
주차장	42,082,697,000	7,885,130,000	49,967,827,000	129,549,352,126	27,103,107,019	102,446,245,107
의료급여	852,986,000		852,986,000	886,586,404	817,451,175	69,135,229
기반시설	2,087,855,000		2,087,855,000			

□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 세입·세출예산현액 52,908,668,000원에 대하여
 - 수납액 130,435,938,530원,
 - 지출액 27,920,558,194원이며,
- 결산상잉여금 102,515,380,336원으로 구 금고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총괄표상의 금액과 일치한다.

1) 세 입

(단위 : 원)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특별회계	소 계	52,908,668,000	186,119,942,286	130,435,938,530	55,684,003,756	337,775,640	55,346,228,116
	주차장	49,967,827,000	184,771,253,292	129,549,352,126	55,221,901,166	337,775,640	54,884,125,526
	의료급여금	852,986,000	1,348,688,994	886,586,404	462,102,590		462,102,590
	기반시설	2,087,855,000					

2) 세 출

(단위 : 원)

회계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특별회계	소 계	45,023,538,000	7,885,130,000	52,908,668,000	28,400,823,194	27,920,558,194	480,265,000
	주차장	42,082,697,000	7,885,130,000	49,967,827,000	27,583,372,019	27,103,107,019	480,265,000
	의료급여	852,986,000		852,986,000	817,451,175	817,451,175	35,534,825
	기반시설	2,087,855,000		2,087,855,000			2,087,855,000

3) 세계잉여금

-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은 102,515,380,336원이며,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102,515,380,336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다-1.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2017회계연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회계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2,082,697,000	7,885,130,000	49,967,827,000	129,549,352,126	27,103,107,019	102,446,245,107

○ 2017회계연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결산총괄은

- 세입·세출예산현액 49,967,82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129,549,352,136원,
지출액 27,103,107,019원으로 구 금고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총괄표상의 금액과 일치한다.

1) 세 입

(단위 : 원)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가	수납액 나	미수납액 가-나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전 년 도	44,931,683,000	173,177,590,014	109,453,799,598	63,723,790,416	227,956,420	63,495,833,996
해당연도	49,967,827,000	184,771,253,292	129,549,352,126	55,221,901,166	337,775,640	54,884,125,526

2) 세 출

(단위 : 원)

회계별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 용 액
전 년 도	44,784,064,000	147,619,000	44,931,683,000	28,954,519,949	21,219,389,279	7,885,130,000	15,827,163,721
해당연도	42,082,697,000	7,885,130,000	49,967,827,000	27,583,372,019	27,103,107,019	480,265,000	22,384,454,981

3) 세계잉여금

- 2017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은 102,446,245,107원이며,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102,446,245,107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다-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2017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잉여금
의료급여	852,986,000		852,986,000	886,586,404	817,451,175	69,135,229

○ 2017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총괄은

- 세입·세출예산현액 852,98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886,586,404원이며
 지출액 817,451,175원으로 구금고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총괄표상의 금액과 일치한다.

1) 세 입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전 년 도	830,437,000	1,289,299,724	880,979,174	408,320,550		408,320,550
해당연도	852,986,000	1,348,688,994	886,586,404	462,102,590		462,102,590

2) 세 출

(단위 : 원)

회계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 용 액
전 년 도	830,437,000		830,437,000	824,596,160	824,596,160		5,840,840
해당연도	852,986,000		852,986,000	817,451,175	817,451,175		35,534,825

3) 세계잉여금

- 2017회계연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은 69,135,229원이며,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69,135,229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다-3. 기반시설 특별회계

□ 2017회계연도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회계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기 반 시 설 특 별 회 계	2,087,855,000		2,087,855,000			

○ 2017회계연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 세입·세출예산현액 2,087,85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0원이며,

지출액 0원으로써 구금고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총괄표상의 금액과 일치한다.

1) 세 입

(단위 : 원)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가	수납액 나	미수납액 가-나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전 년 도	1,424,636,000	2,058,526,287	2,058,526,287	0	0	0
해당연도	2,087,855,000					

2) 세 출

(단위 : 원)

회계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 용 액
전 년 도	1,424,636,000		1,424,636,000				1,424,636,000
해당연도	2,087,855,000		2,087,855,000				2,087,855,000

3) 세계잉여금

○ 2017회계연도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은 0원이며,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0원입니다.

2. 다음연도 이월액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 2017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강남구직업재활센터 증축사업 등 44건인 17,792,220,560원으로서
 - 명 시 이 월 : 9건 12,353,045,000원
 - 사 고 이 월 : 35건 5,439,175,560원이다.

3. 기금결산

□ 2017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기 금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말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계	246,862	28,219	42,464	14,245	275,081
청사건립기금	146,382	23,027	23,119	92	169,408
재정운용기금	39,742	846	846	0	40,588
중소기업육성기금	12,524	-139	5,289	5,427	12,385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1,539	244	244	0	11,783
재난관리기금	8,243	2,706	2,872	166	10,949
도로굴착복구기금	7,950	1,094	5,178	4,084	9,045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4,681	-111	117	229	4,570
체육진흥기금	3,698	439	439	0	4,137
식품진흥기금	3,290	-231	934	1,165	3,059
공무원생활안정기금	2,594	415	1,767	1,352	3,009
옥외광고정비기금	1,505	242	718	476	1,747
구립국제교육원운영기금	2,055	-344	878	1,222	1,712
노인복지기금	1,651	35	35	1	1,686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775	-14	16	30	761
자활기금	232	10	10	0	242

○ 2017년도말 현재의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246,861,662,941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42,464,024,417원을 더하고 사용액14,245,063,946원을 공제한 275,080,623,412원이다.

□ 최근 5년간의 기금조성·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5년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199,576	213,847	225,689	230,302	246,862	5.5
당해연도 조성액	37,109	29,919	24,796	33,887	42,464	3.5
당해연도 사용액	22,837	18,077	20,183	17,327	14,245	-11.1
당해연도말 조성액	213,847	225,689	230,302	246,862	275,081	6.5

○ 기금은 최근 5년간 6.5%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기금조성액에 비해 기금사용의 증가율이 약14.6%p 낮기 때문이다.

4. 재무결산

□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5,624,420	5,666,299	41,879	0.74
Ⅰ. 유 동 자 산	746,057	810,225	64,168	8.60
Ⅱ. 투 자 자 산	26,148	19,551	(6,597)	(25.23)
Ⅲ. 일 반 유 형 자 산	555,306	513,594	(41,712)	(7.51)
Ⅳ. 주 민 편 의 시 설	1,118,235	1,150,672	32,437	2.90
Ⅴ. 사 회 기 반 시 설	3,157,886	3,145,871	(12,015)	(0.38)
Ⅵ. 기 타 비 유 동 자 산	20,789	26,386	5,598	26.93
부 채	94,265	88,241	(6,024)	(6.39)
Ⅰ. 유 동 부 채	23,972	23,089	(883)	(3.68)
Ⅱ. 장 기 차 입 부 채	0	0	0	0
Ⅲ. 기 타 비 유 동 부 채	70,293	65,152	(5,141)	(7.31)
순 자 산	5,530,155	5,578,057	47,902	0.87
Ⅰ. 고 정 순 자 산	4,785,913	4,769,270	(16,643)	(0.35)
Ⅱ. 특 정 순 자 산	265,646	294,542	28,896	10.88
Ⅲ. 일 반 순 자 산	478,596	514,245	35,649	7.45

2017회계연도 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자산은 5,666,29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41,879백만원(0.74%) 증가하였습니다. 유동자산의 총액은 810,225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64,16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비유동성자산의 총액은 4,856,074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22,289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일반유형자산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반면, 2017회계연도 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부채는 88,24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6,024백만원(6.39%) 감소하였습니다. 유동부채의 총액은 23,089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88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단기예수보관금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비유동성부채의 총액은 65,152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5,14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장기미지급금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성질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비 용	648,538	680,842	32,304	4.98
Ⅰ. 인 건 비	129,951	137,667	7,716	5.94
Ⅱ. 운 영 비	270,613	292,420	21,807	8.06
Ⅲ. 정 부 간 이 전 비 용	24,310	25,937	1,627	6.69
Ⅳ. 민 간 등 이 전 비 용	179,056	181,717	2,661	1.49
Ⅴ. 기 타 비 용	44,607	43,100	(1,507)	(3.38)
수 익	726,009	736,653	10,644	1.47
Ⅰ. 자 체 조 달 수 익	489,909	503,516	13,607	2.78
Ⅱ. 정 부 간 이 전 수 익	221,638	224,355	2,717	1.23
Ⅲ. 기 타 수 익	14,463	8,783	(5,680)	(39.27)
재정운영결과 (비용-수익)	(77,472)	(55,811)	21,661	27.96

2017회계연도 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총비용은 680,84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2,304백만원(4.98%)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7,716백만원(5.94%) 증가, 운영비는 전년 대비 21,807백만원(8.06%) 증가, 정부간이전비용은 전년 대비 1,627백만원(6.69%) 증가, 민간등이전비용은 전년 대비 2,661백만원(1.49%) 증가, 기타비용은 전년 대비 1,507백만원(3.38%)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운영비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반면, 2017회계연도 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총수익은 736,65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0,644백만원(1.47%)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조달수익은 전년 대비 13,607백만원(2.78%) 증가, 정부간 이전수익은 전년 대비 2,717백만원(1.23%) 증가, 기타수익은 전년 대비 5,680백만원(39.27%)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지방세수익의 증가와 국고보조금 수익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은 Δ55,811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1,661백만원(27.96%)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운영비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기능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	2017	전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사업순원가 (가 - 나)	212,127	257,659	45,532	21.46
가. 사업총원가	481,802	507,403	25,601	5.31
나. 사업수익	269,675	249,744	(19,931)	(7.39)
II. 관리운영비	124,605	134,717	10,112	8.12
III. 비배분비용	42,130	38,723	(3,407)	(8.09)
IV. 비배분수익	36,877	54,845	17,968	48.72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341,986	376,254	34,268	10.02
VI. 일반수익	419,457	432,064	12,607	3.01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77,472)	(55,811)	21,661	27.96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257,659백만원이고, 관리운영비(134,717백만원), 비배분비용(38,723백만원) 및 비배분수익(54,845백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376,254백만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432,064백만원을 차감한 2017회계연도 강남구의 재정운영결과는 Δ55,811백만원입니다.

5.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다음과 같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P)

구분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수(B)	미달성 수	달성률(A/B)
계	10	63	178	135	43	75.8
공보실	1	1	3	3	0	100
감사담당관	1	1	2	0	2	0
도시선진화담당관	1	2	7	4	3	57.1
기획경제국	1	12	27	16	11	59.2
복지문화국	1	12	29	25	4	86.2
도시환경국	1	9	24	22	2	91.6
안전교통국	1	10	32	25	7	78.1
행정국	1	9	25	18	7	72
보건소	1	6	26	19	7	73.1
구의회사무국	1	1	3	3	0	100

6.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가. 채 권

○ 2017년도말 채권현재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 분 회 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26,545,149,667	14,597,910,405	14,878,643,514	26,264,416,558
일반회계	9,373,768,970	199,182,360	361,391,880	9,211,559,450
특별회계	408,320,550	85,780,780	31,998,740	462,102,590
주차장사업				
의료급여기금	408,320,550	85,780,780	31,998,740	462,102,590
기 금	16,763,060,147	14,312,947,265	14,485,252,894	16,590,754,518

나. 채 무

□ 2017년도말 채무현재액 없음

○ 금전지급 목적의 부채(퇴직급여 충당부채, 장기 미지급금(리스료),
세입세출외현금 등에 대하여는 재무제표에 포함

7.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가. 공유재산

○ 2017회계연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 해 년 도 증 감 액		당 해 년 도 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4,296,622,823,530	17,906,327,703	1,040,836,720	4,313,488,314,513
소 계	4,286,974,387,530	17,906,327,703	1,040,836,720	4,303,839,878,313
행정 재산				
공용재산	701,770,475,891	4,416,630,973	47,507,320	706,139,599,544
공공용재산	3,585,203,911,639	13,489,696,730	993,329,400	3,957,700,278,969
기업용재산	0			
보존재산	0			
일반재산	9,648,436,000			9,648,436,000

나. 물 품

○ 2017년도 말 물품관리 증감 및 물품현재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개,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년 도 증 감						당 해 년 도 말 현재액	
	수 량	금 액	증		감		증 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계	1,308	7,852,883,525	115	761,383,080	94	414,634,170	21	346,748,910	1,329	8,199,632,435
구 매			65	586,444,540			65	586,444,540		
관리전환			50	174,938,540	50	174,938,540	0	0		
매 각					44	239,695,630	△44	239,695,630		
기 타										

8. 세입 · 세출외현금 결산

○ 2017년도말 세입세출외현금현재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증 · 감 액			당 해 연 도 말 현재액
		계	증 가 액	지 출 액	
합 계	14,496,294,303	1,954,845,957	25,786,666,857	23,831,820,900	16,451,140,260
보 증 금	458,698,445	799,141,350	1,438,102,290	638,960,940	1,257,839,795
보 관 금	14,037,595,858	1,155,704,607	24,348,564,567	23,192,859,960	15,193,300,465



개선 및 권고사항

개선 및 권고사항 목록

연번	내 용	소관부서
1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및 정확성 제고 방안	기획예산과
2	미수 세외수입(체납)의 회수 방안 마련	세무관리과 주차관리과
3	강남복지재단 수익사업의 제고 방안 검토	복지정책과
4	강남구 문화재단 수익사업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마련	문화체육과
5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실태 점검 및 정산관리 철저	일자리정책과
6	법인카드 지출결의 정확성 검토 및 결제계좌 잔액의 적정성 검토	재난안전과
7	기금결산액과 금고잔액의 일치여부 검토 절차 강화	기획예산과 도로관리과 도시계획과 총무과
8	회계 통·폐합 시 타 회계 이관 절차 처리 철저	도시계획과
9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관리 감독 및 사후관리 철저	공동주택지원과
10	포상금 제도에 대한 개선	전부서
11	채권관리 담당자 교육 강화	재무과
12	세입세출외현금 예치금 세입조치 이행	

1.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및 정확성 제고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 성과보고서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성과지표가 정책 사업목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안전과의 “선진 안전문화 운동을 정착한다” 는 정책 사업목표에 대해 성과지표를 “목표 대비 시행횟수” 로 설정하였으나 이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 및 시민안전의식을 고취 시킨다” 는 정책 사업목표에 “사회복무요원 복지후생 실적” 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나, 이는 정책 사업목표와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달성률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점검 횟수” , “어린이 재난안전교실 운영 실적” 을 측정산식으로 기재하였으나 목표, 실적, 달성률을 모두 100으로 기재하여 달성률을 계산한 구체적인 측정산식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 성과보고서의 도입 취지에 맞게 작성될 수 있도록 향후 성과보고서 작성 시 계획단계에서 부터 작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작성된 성과보고서에 대해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미수 세외수입(채납) 회수 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 당해 연도 말 미수 세외수입금 잔액은 1,349억원이며, 이는 주로 미수 과태료(1,050억/77.9%)와 미수 과징금(155억/11.5%)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기 중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2017년 중 미수 세외수입금의 변동 내역>

(단위 : 억원)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증감액
1,450	1,160	1,261	1,349	-101

- 구청은 미수 세외수입금에 대하여 고지서 발송, 예금 압류조치 등의 미수 세외수입금의 회수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년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표. 과거 3개년 미수 세외수입금 잔액 및 결손처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미수세외수입잔액	1,446	1,450	1,349
결손처분액	19	33	31

【 개선 및 권고사항 】

- 2017년 현재 미수 세외수입금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8%로 약1,349억원입니다. 지난 3년간 미수 세외수입의 잔액은 1,300억 ~ 1,450억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며, 이는 동 금액만큼의 장기성 미수 세외수입금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강남구청과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를 비교하더라도 미수 세외수입금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수 세외수입 회수를 독려하여 장기 미수 세외수입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이는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장기 미수 세외수입금에 대한 회수를 촉진하길 권고 드립니다.

<표. 2016년 강남구와 타구의 미수 세외수입금 잔액 비교>

(단위 : 억원)

구 분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미수세외수입금	776	857	1,450
자산총액	54,961	50,883	56,244
비율	1.41%	1.68%	2.58%

- 구청은 매년 채권발생일로 부터 채권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미수 세외수입금 결손 처분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되어지는 채권은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권이며, 압류가 이루어진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결손처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해당 채권의 대손충당금에 반영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 회수나 보호를 위한 압류조치가 미수 세외채권의 경우 실효성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미수 세외채권이 소액이고 후 순위 이기 때문에 경매가 이루어 지더라도 회수금액이 없거나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압류가 이루어진 채권 중 악성 장기 미수 세외수입금은 결손절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손충당금조차 설정되어 지지 않고 있어 재무제표에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적절히 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압류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낮은 악성 장기 미수 세외수입금은 별도로 구분하여 강도 높은 회수조치를 취하여 회수율을 높이거나, 결손처분을 하여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적절하게 대손충당금을 계상하는 등, 일반 채권과는 구별되는 관리 절차를 수립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3. 강남복지재단 수익사업의 제고 방안 검토

【 현황 및 문제점 】

- 강남복지재단은 강남구가 출연하여 2014년 10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 복지 서비스 전문성 증진 및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두가 참여하는 구민 참여형 복지재단으로 만들고자 설립되었습니다.
- 2017년 강남복지재단의 운영실적을 보면 기부금 수익이 20%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부족한 사업비는 그동안 축적된 잉여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 향후에 계속해서 기부금이 감소될 경우 사용재원이 고갈되고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에는 신속하게 재무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복지재단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4. 강남구 문화재단 수익사업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 강남구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과 강남구민의 문화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2017년의 실적에 의하면 자체사업의 수입이 더욱 떨어졌습니다. (2016년 11.4억원, 2017년 8.4억원) 특히 강남돌 상품관련 수입은 2016년 3억원에서 2017년 1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 강남구 문화재단은 출연금 수익과 위탁금 수익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의 비중과 수익성에 대해서는 늘 논의되어온 바 있습니다. 2017년에 급격하게 줄어든 사업은 심포니 외부공연과 브런치콘서트로서, 이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인한 기업들의 참여 부진이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강남돌 상품관련 수입 감소는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중국 사드 보복으로 인한 중국 관광객 급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의 수익사업은 가능한 한 수익을 많이 창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그 목적에 맞게 강남구에 더 많이 공헌할 수 있습니다. 재단이 수익사업의 수익성을 위한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과 조직력을 구축 하길 권고합니다.

5.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실태 점검 및 정산관리 철저

【 현황 및 문제점 】

- 일자리정책과에서는 2017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십사업(민간경상보조)에 대해 총 1,52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금 운영기관인 강남구상공회의소와 한국전시주최자협회가 지원금 대상에 대해 해당 중소기업의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받아 익월에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십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보조금 운영기관	집행액	비 고
청년인턴십 사업	강남구상공회의소 (사)한국전시주최자협회	1,528,819	인턴사원채용(204개사 260명) 정규직 전환(88개사 102명)

- 지원금 집행의 적정성 검사 결과 보조금 운영기관은 지원금신청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구비서류(임금대장, 이체확인증(은행발급))가 적정하게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 보조금 운영기관은 예산 집행시 준수해야 할 확인 절차 및 증빙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및 정산시 보조금 수령업체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도록 구청 담당자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연 1회 이상 보조금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보조금신청서, 평가서 및 회계장부나 증빙서류 등을 검사하고 감독하기를 권고합니다.

6. 법인카드 지출결의 정확성 검토 및 결제계좌 잔액의 적정성 검토

【 현황 및 문제점 】

- 법인카드 사용액에 대한 지출결의 및 결제계좌의 잔액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재난 안전과의 경우 소액이나 12월에 지출 결의된 금액이 사용 증빙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26일 현재 지출결의가 이루어져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아 익월에 결제될 예정인 금액이 1,499,000원이나, 통장 잔액은 이보다 적은 1,392,31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사유는 과거기간에 지출 결의되어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실제 법인카드 결제액과 불일치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 법인카드 결제액이 지출 결의된 금액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월, 분기 혹은 연단위로 법인카드 결제계좌의 잔액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는 절차를 보완해야 합니다.

7. 기금 결산액과 금고잔액의 일치 여부 검토절차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액(당해연도말조성액)과 금고(신한은행) 잔액(일괄잔액대사표)을 대사한 결과, 총15개 기금 중 다음 3개 기금의 결산액이 금고잔액과 불일치합니다.

(단위 : 천원)

기금명	결산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금고 잔액	불일치금액
옥외광고정비기금	1,747,392	1,746,579	(814)
도로굴착복구기금	9,101,149	9,044,771	(56,377)
청사건립기금	169,500,578	169,408,325	92,253
합계	180,349,119	180,199,675	35,062

- 결산액이 금고 잔액과 불일치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기금명	불일치사유	불일치금액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입계좌 착오 입금(과대계상)	(814)
도로굴착복구기금	세입계좌 착오 미입금(과소계상)	814
	보통예금이자 세입 누락	1,871
	공금예금이자 귀속연도 착오 계상 (2018년도분)	(59,062)
	소계	(56,377)
청사건립기금	공금예금이자 합계 과소계상	92,253
합계		35,062

【 개선 및 권고사항 】

- 각 기금의 결산담당자는 세입·세출 과목별 금액을 확정시 회계 귀속연도 구분 및 계좌간 오류 금액이 없는지 재확인하고 최종 결산액이 금고의 잔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상호 대사하여 결산절차를 마무리하여야 하며,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결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기금총괄담당자는 각 기금담당자가 제출한 결산서 및 금고 잔액증명서를 재확인하여 결산액에 오류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8. 회계 통·폐합시 타회계 이관 절차 처리 철저

【 현황 및 문제점 】

-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17년 11월 3일 폐지 조례안을 공포함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에 속한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하고, 폐지 시 결산잉여금은 일반회계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 회계 폐지 시에는 원칙적으로 추경예산편성(특별회계 감편성, 일반회계 증편성)을 통해 결산잉여금을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지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당기에 발생한 이자수입(74백만원)을 세입처리하지 않았으며, 폐지 시점에 남은 금고 잔액(2,133백만원)을 수기로 일반회계로 이관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부적정 처리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	결 산		결산상잉여 금 ㉡ = (㉢ - ㉣)
		세입㉢	세출㉣	
기타 특별회계	52,909	130,436	27,921	102,515
주차장 특별회계	49,968	129,549	27,103	102,44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53	887	817	69
기반시설 특별회계	2,088	-	-	-

【 개선 및 권고사항 】

- 기타 특별회계나 기금 통폐합 시 해당 시점까지 발생한 세입·세출 거래내역을 반영하여 해당 회계의 결산을 적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 추경예산편성(특별회계 감편성, 일반회계 증편성)을 통해 타회계로 적정하게 이관(내부 거래-타회계기금전출금)처리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9.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관리감독 및 사후관리 철저

【 현황 및 문제점 】

- 공동주택지원과에서는 2017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으로 총 45개 아파트에 대해 1백만원에서 35백만원까지 총 682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심의 결정하고, 13차에 걸쳐 총 550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7년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대상	심의결정액 (2017. 2. 10)	실제 지출액 (13차 교부)	정산액	반납액
총 45개 아파트	61	681,997	549,520	549,520	-

- 공동주택지원과는 보조금 신청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총 공사비 중 일정부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추후 단계별로 착수통보서 및 정산서를 징구하여 계약서, 지출증빙자료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결산검사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 공동주택지원금 정산 시 준공검사조서 미제출
 - 공동주택지원금 단지별 준공처리 전 전문가 자문결과서 및 확인보고서 미제출

【 개선 및 권고사항 】

-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의 보조금 정산 시 방침에 규정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사후감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 보조금을 교부한 공동주택단지 중 일부가 준공검사조서를 미제출 하였거나, 단지별 준공처리 전 전문가 자문을 미실시한 단지에 대해서는 보완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10. 포상금 제도에 대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 2017년에 포상금은 총 16.8억원 지급되었으며 이중 1.5억원의 개인포상금을 제외한 금액은 대부분 부서 포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포상금 지급 대상의 선별 및 역할에 대한 현황 파악
포상금의 선정에 있어서 성과 및 포상에 대한 대가보다는 부서 고유의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였음에도 지급하는 추가 수당의 성격이 섞여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기획예산과, 주차관리과 외) 또한 부서 포상금의 경우 업무성적을 높이기 위한 역할도 있으나, 부서 운영비의 성격도 있습니다.
- 포상금의 관리 현황
개인 포상금의 경우는 개인통장으로 입금되고 있고, 전체 포상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부서 포상금의 경우에는 각 과별로 관리하는 통장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의 각 과에서는 과별 관리통장으로 지급받은 포상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하거나, 특정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의 사용 현황
각 과에 지급된 포상금은 회식비와 격려금, 명절선물, 퇴직선물 등으로 사용한다는 응답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현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특정개인통장으로 이체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된 기획예산과와 자치행정과는 그 통장의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포상비 관련 구체적인 개별 항목이 기재된 구체적인 관리 내역에 대해서는 없다고 응답하거나, 있어도 줄 수 없다고 하여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상기 자료제출 거부 이유는, 공통적으로 2016년 행정자치부에 대한 질의회신 문서상에 ‘포상금 수령 후 사용방법이나 사용처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는 내용을 근거로 거부하였으며, 기획예산과는 검찰수사도 아닌데 결산검사장에 제출을 해야 하나며 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 포상금 지급 및 관리 현황의 문제점은, 포상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지급이 있는 등 타성적으로 증빙 없는 비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 부서 포상금의 사용 및 관리가 전혀 투명하지 않아 이 자금의 정당한 사용에 대한 의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세무 관련 소득 등의 정당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 포상금은 실적 및 성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여 구성원들이 노력하고 높은 성과를 창출한데 대한 보상과 격려로서의 의미와 역할이 있습니다. 그 부서 및 과의 고유 업무에 대한 추가 수당 성격의 포상금은 진정한 포상의 역할에서 벗어나므로 개선해야 하며, 진정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항목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하는 것이 전 직원에게 공평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대부분의 합리적인 경영조직에서는 포상을 할 경우 회식 예산을 부여하거나 부상을 주는 등 포상에 대해서도 정당한 비용처리를 하고 있으며, 현금으로 부서나 과에게 지급시에는 최종 지급대상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했다는 증빙을 관리하고 개인에 대한 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서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아직 회계처리가 안된 전도금의 성격인 것입니다.
- 대부분 과에서는 포상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조직이 상기 행자부 질의회신에 의지하여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의혹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동 행자부 질의회신에 의하면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빙서류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이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의미가 강하므로 관리 내역이나 문서 자체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이 증빙서류가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다’는 것은 제출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제출해도 된다, 제출 가능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 개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과로 지급된 포상금의 관리 및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투명성을 밝힐 수 없다면 현 제도 안에 숨어서 이를 이용하기 보다는 납득할만한 시스템으로 스스로 바꾸

거나 다른 예산으로 대체하여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바람직합니다.

포상금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바, 이 지급된 금액이 증빙도 없이 비용처리 되고 어떻게 쓰이는지조차 투명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현재 포상금 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정비 및 개선이 필요하며, 확실한 성과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하여, 포상제도 고유의 역할이 가능한 포상제도로 거듭나야 합니다.

과별 포상금 지급 방법에 있어서 현재의 방식보다, 회식이나 여타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불투명하게 사용하기보다 그 해당 공적이 있는 팀의 직원에게 배부한 후 이를 세무상 원칙에 맞게 증빙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개인별 포상금도 이와 동일하게 관리 및 처리해야 합니다.

과별 포상금으로 운영하고 지출해오던 비용이 있다면 이는 합리적인 예산으로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예산을 포상금에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근로자들에게 정식으로 배부하고 소득처리 한 후 일부를 다시 모아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1. 채권관리 담당자 교육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 2017년 기금 결산 중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총 3,660백만원 중 1,101백만원 만 유동성 채권으로 분류되어야 하나, 1,236백만원이 유동성 채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은 매월 급여에서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므로 미수이자 계상되지 말아야 하나, 2017년 결산 시 9,587,972원의 미수이자 계상되었습니다.
-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각 부서의 채권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무결산에 대한 관심도 및 이해도가 낮아, 각 부서의 채권 결산담당자가 취합부서에 제출하는 자료가 적절하게 작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 재무결산은 조직 전체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담당자의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잦은 보직 순환 및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각 부서 채권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무제표가 왜곡 표시 될 위험이 높습니다.
-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서 채권관리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수요를 조사 한 후, 교육을 원하거나 필요한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책을 마련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12. 세입세출외현금 예치금 세입조치 이행

【 현황 및 문제점 】

-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에 귀속하고 장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고,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면서 세입세출외현금 예치금에 대하여는 보관기간 보관사유 등을 검토하여 세입조치대상은 즉시 세입조치 하여야 하는데도, 아래 “세입세출외 현금 예치금 세입 미조치 현황” 과 같이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 5년이 지났는데도 세입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계속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예치금 세입 미조치 현황(일부발췌)

(단위 : 천원)

현금종류	수납일자	적 요	납부자	반환기일	금액
기타보관금	2008.10.24	복지원상복구하자예치금 1020-005-715670	SH공사장	2010.12.31	16,200
기타보관금	2008.12.30	원상복구 예치금	토목과	2010.12.31	145,926
원천공제액	2012.12.31	2012년12월31일 기준 은행거래 잔액(실제 있는 잔액)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잔액(현황관리 잔액)차이	재무과	2013.02.28	51,083

【 개선 및 권고사항 】

-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 제77조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를 준수하여 장당한 사유로 인한 예치금을 제외하고는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 5년이 지난 예치금은 세입조치 하여야 합니다.